

「한농연 2002년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요구 조안」②

한농연은 작년 대선공약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부터 2002년 대선공약 기획위원회를 구성, 대선공약 자료수집 및 토론회 등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농연이 요구할 대선공약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준비활동을 해 왔다.

이러한 대선 준비활동을 진행해온 결과물로, 「한농연 2002년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요구(안)」을 수립하였으며,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. 또한 한농연은 11월 5일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대통령 후보들을 초청하여 「대선후보 초청토론회」를 개최한다.

이에, 월간 한농연에서는 「한농연 2002년 대통령선거 17대 공약 요구사항」을 2회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.

1

쌀농가 소득보장대책 및 안정적인 중장기 식량자급정책 수립

(1) 쌀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

- 소득보장 안정 시스템 구축

- 「쌀가격 및 쌀농가소득안정기금」신설 (양곡 수입 관세수입 전액 기금전환)
- 고령농가 및 은퇴농가에 대한 연금확대, 생활 소득 안정대책 마련
- 쌀농가 정책자금 및 상호금융금리 인하
- △국내식량원조 △소득보험 △소득안정화 계획 등 각종 보조금제도 확대시행
- 생산조정하의 직접지불제 도입

(예 : 일본의 도작경영안정제, 쌀값하락의 80% 보전)

- 고품질 쌀 생산집단 장려직접지불 실시
- “국민주식인 (쌀)을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킬 것”을 취임사에 표명
- 논농업직접지불제 강화
 - ha당 선진국 수준이상 지원 확대(미국 예 : 100만원~120만원/ha, 2001년 기준)
 - 「보조금 지원규모 예산의 연차인상」 법률 명시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시행과 소득보장 가능강화
- 누적 쌀 AMS 감축액의 직불제 예산 투입
 - 20,343억원('95) → 15,097억원('02)의 AMS 누적감축분 5,996억원
- 생산증립적 직접지불제 확대



- 경영이양직불제 및 친환경농업직불제의 현실적인 단가 인상
- 미국의 생산자율계약제도, 유럽의 조건불리 지역직불제, 일본의 중산간직불제 등과 같은 국내농업실정에 맞는 허용보조정책 수립 및 확대
- 모든 밭작목에 대한 밭농업직불제 실시
 - 조건불리지역으로 국한된 것이 아닌 일정 조건의 밭농업 전체를 대상
 - 제주 감귤농업 등 수입농산물로 인해 가격 폭락 및 소득하락의 피해를 입는 밭농업의 경우 직불제를 통한 소득보전
 - 이농이 심한 지역의 경우 “인구정책”的 일환으로 실시
- 2002년 이후 농가 실질소득 하락에 대한 정부 보전
 - 휴경을 전제로 한 생산조정하의 직불제 (BLUE BOX) + 논농업직불제(GREEN BOX)를 포함한 직접소득 보전 80%
 - △세금감면 △학자금지원 △의료지원 방식을 포함한 간접소득 보전 20%

(2) 식량자급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

- 농업·농촌기본법 상 식량자급 목표 및 자급계획 명시 (표 6-3 참조)
 - 식량자급도 설정을 위한 농업·농촌기본법 (제 6조) 시행령 제정
 - 통일 및 재난을 대비하여 전체 식량자급율 35%, 쌀자급율 100% 이상
 - 식량자급 계획은 △식량안보 및 식량자급 확보를 위한 쌀생산량 및 재배면적 △생산기반 발전을 위한 투자 △통일 및 재난을 대비한

- 적정 비축량 등을 포함
- 식량안보용 공공 비축제 도입
 - 재난 및 통일을 대비하여 최소 총 수요량의 20% 비축(약 700~800만석)
 - 시장재고 축소, 계절진폭 상승, RPC 민간기능 활성화를 위한 10% 추가 비축(약 300~400만석)

(3) 장기적인 쌀 소비확대 정책 수립

- 국내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학교급식법 개정
- 쌀 소비 확대를 위한 “초·중·고등학교” 교육 의무화
- 법정부적 차원의『쌀 소비대책운동본부』설립
- 정기적인 대량수요처 및 통일을 대비한 “대북 지원 관련 법안” 마련
 - WTO 체제에서 내부간 거래를 인정받아 대북 지원 정기화
- 국내식량(원조)구호제도 마련 및 예산확보
 - 공공 급식소 및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무상 신곡 제공
 - 농림예산 외 사회복지예산 편성
- 가공용 식품 연구개발 및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
 - 가공용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
 - 가공용 식품개발 연구지원 확대

「한농연 2002년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요구 조안」②



▲ 국민 주식인 “쌀”이 재고로 인하여 언제부터 인가 천덕꾸러기가 되었다. 사진은 집회도중 길거리에 쓸어진 쌀.

- 국내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학교급식법 개정
- 쌀 소비 확대를 위한 “초·중·고등학교” 교육 의무화
- 범정부적 차원의『쌀 소비대책운동본부』설립
 - 정부, 학계, 농업계, 기업, 소비자 참여
 - 지속적인 소비 확대정책 생산 및 활동
- 정기적인 대량수요처 및 통일을 대비한 “대북 지원 관련 법안” 마련
 - WTO 체제에서 내부간 거래를 인정받아 대북 지원 정기화
- 국내식량(원조)구호제도 마련 및 예산확보
 - 공공 급식소 및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무상 신곡 제공
 - 농림예산 외 사회복지예산 편성
- 가공용 식품 연구개발 및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
 - 가공용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
 - 가공용 식품개발 연구지원 확대

(4) 공정하고 효율적인 양곡유통체계 확립

- 양곡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관련법안 강화

●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관련법안 강화

양곡관리법 제4장 31조 ①항, 32조 ②항 개정안

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대상 미곡을 수입한 자 및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처분한 자에 대해 수출·수입업자 등록 취소 및 10년 이하 징역에 처함

● 양곡 불법유통방지 관련 법안 강화

양곡관리법 제4장 33조, 34조 개정안

- 규정에 의해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용도외로 양곡을 사용, 처분한 자를 비롯해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대상인 양곡가공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양곡가공업 영업정지 및 3년 이하 징역에 처함
- 규정에 의해 양곡가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당해 영업을 계속한 자에 대해 양곡가공업 등록 취소에 처함

○ 유통개선-가격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체계 확립 프로그램 마련

- 재배농가 단위의 토양개량과 시비법 개선, 지역실정에 맞는 품종선택, 계약재배 확대
- RPC의 첨단시설과 조제가공기술, 완전미 생산과 중저온저장고 등 첨단시설 도입
- 유통업체의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한 유통기술 및 품질관리제도 개선

○ 양곡관리의 일원화

- 농림부와 지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양곡관리가 어려움
- 수매실적, 보관창고 및 RPC시설, 양곡재고, 양곡 회계관리, 가공, 수송, 공매 매출 등 전 산 종합시스템 구축

- 재고의 정확한 계측 및 체계화립과 함께 재고 관리의 농림부로의 일원화
- RPC기능 강화를 위한 연속적인 장기지원 확대
 - 반 사회간접자본 형태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간접 경영책임
 - 농협중앙회 경영 흑자분 5%, RPC를 통한 수매가격지지 지원금 투입

2

국내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업통상 전략 수립

(1) 통상기금 제도 수립 및 농산물 수입 관세를 농업발전기금으로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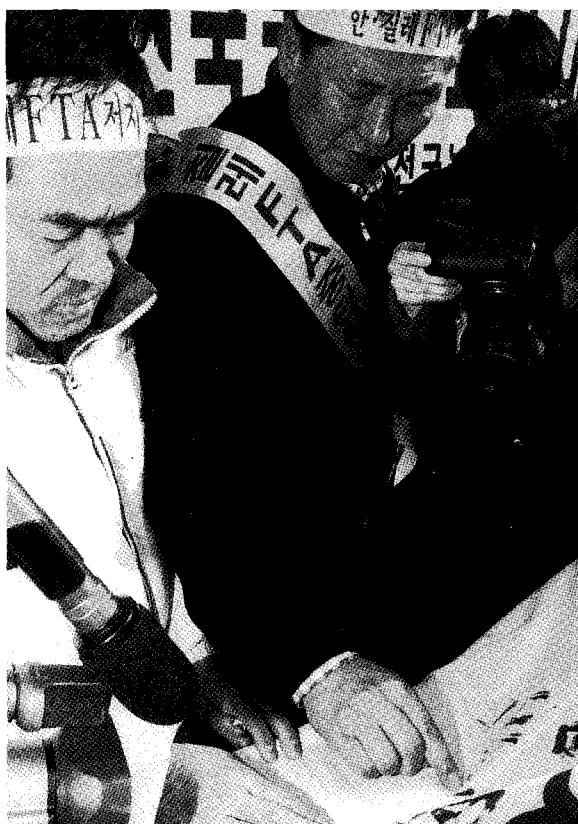
- 농산물 수입관세 전액 “농업발전기금” 전환
 - 한해 100억불에 달하는 농산물수입액의 관세 수입인 약 6조5000억원(양허관세 67%, 실 행관세 50% / 2000년 기준)을 발전기금으로 재투입
 - 농산물 수입관세 부과방식을 “종량세”로 완전 전환
- 가칭 「국제통상 기금제도」 도입
 - WTO체제 이후 민간수입 범람으로 인한 국내 농산물에 대한 타격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이에 대한 가격지지 및 보전대책이 미흡함
 - 따라서, 통상화대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는 농업부문의 사회 구제제도의 일환으로 통상이익 중 일정액(약 1%)을 피해를 입는 농업부문에 지원하는 통상기금제 도입

(2)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및 쌀관세화 유예 관철

- 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
 - 개도국 우대조치
 - 개도국 지위를 인정한 국제기구 : OECD에 가입(1996년)시 농업부문 인정 · FAO(유엔식량농업기구) · IBRD(세계은행) 및 IMF(국제통화기금)의 각종지표 · MIGA(국제투자보증기구) · UN(유엔개발계획)
- 국내농업 특성을 반영한 WTO 협상 양허안(2003년까지 제출) 마련
 - 쌀관세화 유예, 개도국지위 유지 내용 포함
 - 개도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의 인하
 - AMS 산출시 물가상승률 포함
 -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허용보조 포함
 - 식량안보와 농촌개발 관련 국내보조의 감축 의무 면제
- 국제 NGO간 교류 지원
 - 정부의 NTC 관찰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보조금 지원
 - 국내 NGO에 WTO협상 과정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체계 수립
- 국제규범 및 협정문 해석 규정 마련
- 2004년 쌀자협상 전략 수립 및 쌀산업 발전을 위한 최선의 대책 수립
 - “쌀관세화 유예” 관철

(3) WTO 협상에 대비한 강력한 통상협상 대응체제 구축

- WTO 농업분야 협상 대표단에 농민대표 참가
- 2004년 쌀 재협상 관련 협상전문가 집중 육성



▲ 지난 2001년 3월 5일 한·칠레 FTA저지를 위한 농민 대표자 대회에서 협서를 쓰고 있는 농민단체장.

(4) 국내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WTO 허용정책 대폭 확대 시행

- WTO에서 허용하는 지원정책 도입
 -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허용보조 정책 시행
 - 이미 선진국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험제도, 연구지원, 기반시설투자, 소득안정화계정 등 허용보조 정책의 개발 및 시행이 시급함
- WTO협상에 따른 품목별 피해액에 대한 조사 및 계수화
 - 「관세인하」등 WTO협상에 따른 농산물 각 품목별 피해수준을 계수화

- 품목별 세부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기금 조성
- 해당 품목단체와 함께 품목별 세부대응책 마련
- 농산물「음식점 원산지표시제」실시
 - 농산물의 음식점 메뉴판(차림표) 원산지표시 제 도입
 - 품질인증제식 음식점 우수농산물사용 인증

(5) FTA 협상에서 농업부문 제외

- 한·칠레 FTA 협상 추진 완전 철회
- 농업부문을 제외한 FTA 논의 추진

3

농촌의료·문화·생활환경 등 농촌복지정책 개혁

(1) 도시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농업인 사회 보험제도 강화

- 산재보험제도와 동등한 수준으로 '농업인 안전 공제'의 개선
- 농어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 국고보조 50% 관철
- 의료보험료 산정체계의 개선
 - 농지, 차량 등에 대한 보험료 중복부과 문제 해소 및 빙 축사, 휴·폐경지의 재산분류 제외
 - 주소위주의 보험료 책정방법에서 실사를 통해 실제 농업인에 대해 보조하는 방법으로 개선

(2)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령농업인 소득보장 및 지원 확대

○ 고령 농업인을 위한 각종 소득보장정책의 개선
(농림부)

- 경영이양직불제의 효과적인 운영
- 기술력과 농산물 판로지원 및 고품질 농산물 재배를 위한 소규모 그룹조직화 등 고령농업 인의 소득보조와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영농 프로그램 개발

○ 고령 농업인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개선(보건 복지부)

- 농어민연금의 보험료 보조 확대 및 정착화
- 농촌특성을 고려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

○ 농촌의 특수성을 감안한 노인복지제도 도입

○ 농업인의 정년기준을 65세로 확대

(3) 농어민종합병원 설립 등 농촌 의료문제 해결

○ 의료보험료 산정체계 개선

- 농지, 차량 등에 대한 보험료 중복부과 문제 해소
- 빈 축사, 휴·폐경지 등 생산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재산분류 제외
- 농업인의 보험료 경감 수준 현 22%에서 50% 수준으로 인상
- 주소위주의 보험료 책정 방법에서 실사를 통해 실제 농업인에 대해 감면하는 방법으로 개선

○ 도 단위 농어민종합병원 설립

○ 의료시설 접근성 제고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형 보건지소 확충

○ 농업인 고유의 질병에 대한 의료대책 및 연구 시행

- 농작업으로 인한 농부증, 농약중독, 비닐하우스증후군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·연구

- 농업인 고유질병 관련 전문연구소 설립 및 전문의 제도 도입

(4) 농업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금 및 대책 수립

○ 농업정보화 인프라 조성

- 농촌지역 정보화서비스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 공제 및 장기 저리 지원
- 영농목적의 PC에 한해 구입 시 50% 국가보조 (경북도에서 시행 중)
- 마을 정보센터, 농민PC방 운영으로 교육장 확충 등 접근도 제고

○ 농업정보화 촉진을 위한 특별 기금 조성

○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교육 강화

○ 실용적인 농업컨텐츠 개발(농림부)

- 농림부, 농촌진흥청, 농협중앙회 등 각 기관별 특성화된 전문정보 제공
- 품목별, 농가 수준별 경영·기술 소프트웨어를 개발, 무상 보급
- 농업정보화 취약계층인 저소득, 저학력, 축산·논작물 농가를 대상으로 한 컨텐츠 개발

(5)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 방안 수립

○ 전액 국고지원으로 공공보육 환경 개선

- 표준 보육과정 개발과 함께 연령별 차별화된 공공 보육시설 확충(초등학교 병설 보육원, 마을회관/복지관 내 보육원 운영)

○ 농가도우미제도의 확대

4

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농업인 자녀 지원 확대

(1)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중단 및 대책 수립

-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중단
- 폐교된 농어촌지역 학교 재개교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

(2) 농어촌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

- 7차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원 확보 및 시설 확충
 - 단기적으로 순회교사, 기간제교사를 통한 부족한 교원 확충
 - 장기적으로 순회교사, 기간제교사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전임교원을 확대하여 교원의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
 -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원확보 Master Plan 제시
- 교·사대 졸업 후 농어촌 지역에서 장기 근무 희망자 병역특례제도 실시
- 특기적성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시설과 기자재 확충 방안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
- 농촌지역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장치 마련
- 교·사대는 10% 이상 농촌지역 출신 고교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출신지에 우선 발령도록 제도 개선

(3) 농어촌지역 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및 학자금 지원 확대

-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실시
-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

대상 변경 및 지원확대

- 현행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로 변경
- 농협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지역 대학생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
 - 현행 5.25% 금리에서 재학 중에는 무이자로, 졸업이후 원금상환과 함께 이자를 납부하는 방안 도입
- 농촌지역 저학년 학생들의 효율적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비 지원 대책 수립
 - 원거리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마련

(4) 농어촌지역 학생 대학특별전형제도 개선

- 수도권 국공립대학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비율을 현행 3%에서 5%로 확대
-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제도 개선
 - 현행 농어촌지역 고교출신 졸업생을 우선으로 하는 제도에서 농어촌 고교 졸업생 중 고향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대학 지원생을 최우선으로 선발하며, 그 다음 타고교 출신이라도 농어촌에서 평생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선발함
 -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선발자 농어촌지역 공익근무요원 배치
 - 농어촌에 정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과(교육, 의료, 사회복지, 농대) 우선 선발

5

생산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추진

(1) 생산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추진

- 매년 수입농산물 관세수익을 농업발전투자 재원으로 전환
 - 한해 농산물수입액 100억불의 관세수입인 6조5000억원(2000년 기준)을 “농업발전기금”으로 전환
- 수입농산물 검역 강화
 - 국립 식물검역소의 1일 검역 일정량 조정을 통한 수입장벽 구성
 - 잔류농약 허용치 기준강화 등 안전농산물 검역 기능 강화
- 가칭 (품목별 생산 및 농가소득안정 위원회) 설치
 - 획기적인 생산비 보장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, 품목별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조정기구 구성
 - “품목별 생산 및 농가소득안정 위원회”를 통해 품목별 생산비를 산출하고, 연간 생산 및 가격변화에 따른 농가소득 보장 기준 결정
 - 품목별 생산농민, 전문가, 유관기관이 참가하는 『생산단가 조사단』을 구성하여 품목별 생산단가 기준안 마련
- 산지 생산조정대책 수립
 - 품목별 협동조합연합회 조직화 및 활성화
 - 정확한 품목별 재배면적 조사 및 매년 품목별 면적 조정기능 수립
 - 품목별 생산량 예측을 통한 종자 보급량 조정
- 품목별 생산비 보전대책 수립
 - 매년 농업관측치 대비 실제수치 비교·분석 안 공개
 - 품목별 생산비와 시장가격의 가격차 보전

- : 보조금 총액을 해당 농산물의 총 생산액 10% 규모로 산정하여(최소허용보조 총액) 가격안정사업 예산으로 투입
- : 간접 보조 ▲학비지원 ▲세금감면 ▲의료지원 ▲민간부문의 수매지원 확대
- 품목별 농업관측 시스템 강화
-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체계 개선
 - 품목별 분류 (전체 수급조절을 위한 물량 조작 요구량, 저장, 가공, 수출을 이용하는데 따른 수급조절효과)에 따른 기금 지원체계 마련
 -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도매법인, 일반 저장업체, 수출업체 등에 배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안기금운용을 축소하고 생산자단체에 지원확대
- 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 : SG) 제도 강화
 - 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 : SG) 담당 조직구조 개편
 - : 조사 및 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자부

● 위원 위촉 조건 개선

- ① 기업경영 또는 무역진흥분야 경력 10년 이상(현재) → 농업경영 경력자 포함
- ② 대학 또는 공인연구기관 조교수 이상 경력 10년 이상
- ③ 판사 겸사 또는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
- ④ 산업정책 또는 무역진흥분야 2급 이상 공무원 경력 등을 가진 인사
- ⑤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, 임기는 3년, 연임 가능
→ 농림부장관 제청권 포함
- 현재 위원장 1인, 상임위원 1인,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(산자부, 금감원, 재경부, 대외경제정책위원회 등 관계자) → 상임위원 농업부문 전문가 1인 추가 선정

「한농연 2002년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요구 조안」②

● 표 12-1 농업부문 세이프가드 시행 기간 특별 조정(안)

구 분	기 준	현 재	농업부문 특별조정안
조사개시 여부 결정	신청서 접수일 부터	30일 내	15일 내
산업피해 유무조사 및 판정	조사개시일 부터	4개월 내	3개월 내
잠정조치	신청서 접수일 부터	60일 내	30일 내

무역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농업부문 전문가
추가선정

- 무역위원회에 농업부문특별조사과 신설(현재, 조사총괄과, 산업피해조사과, 가격조사과, 수출입조사과 구성)
- 농업부문 세이프가드 시행 기간 특별 조정

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토록 전면수정

(2)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축소와 관리 강화

- 상장예외품목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·감독
시스템 구축
 - 농안법 상의 원칙과 목적에 맞도록 특수한 경 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
 - 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 정산창구를 통한 대금 즉시 결제, 상장수수료 초과징수 금지 및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도 상장경매 참여 유도
- 농안법 8조의 「가격예시」제도의 실질적 시행
 -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당해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하한가격 예시로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농안법상의 가격예시 실시
 - 상장예외품목은 최저가격 예시 의무화
- 상장예외품목 취급 「거래보증금 한도액」의 대 폭 상향조정
 -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의 거래 보증금 한도액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사고시 대비 : 현행 500만원(알타리, 고구마 : 1,000만원) → 5000만원
- 공영도매시장의 운영주체 혁신 및 유통비 리 척결

6

도매시장 물류개혁 등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

(1)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

-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역기계화 시설 구축
- 하역조직의 체제 정비
 - 가락시장 물류개선 핵심인 하역노조의 구조 개선은 실직 하역인력의 생계보장이 연결되어야 하는 만큼 농림부와 서울시가 책임지고 정리, 직접 수행
- 표준하역비를 완전규격출하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토록 함
 - 현재의 표준하역비 체제 하에서는 생산자의 하역비 부담 경감효과가 없으므로, 산지출하체계 개선과 도매시장 하역기계화, 각 도매시

- 서울시의 직접적인 가락시장 관리 및 관리·감독 기능 강화
-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유통종사자 지도·감독 강화, 감사원 감사 실시
 - 도매시장의 전근대적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해당 유통종사자 허가지정 취소
 - 가락시장의 장외거래 등 불법비리 엄단과 소매행위 근절방안 수립
- 도매시장 법인의 출하장려금이나 판매장려금을 차등화하여 경쟁체제 구축
 - 출하자나 중도매인에게 법인 선택권 보장
- 중도매인의 법인 전환을 원활히하기 위해, 점포배정 및 세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거래한도를 대폭 인상하여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분산능력 강화
- 개설자의 우수중도매인 수시 모집 및 중도매인 평가 지표를 업무규정으로 확정
 - 중도매인 수시모집으로 점포 불법전대문제 해소와 비허가상인 정리 방안 마련
 - 업무규정(조례) 등에 정해져 있는 중도매인 수 한정 폐지 및 평가정례화로 월간 최저거래 금액에 미달하는 영세중도매인의 확실한 퇴출

(4) 전자경매의 보완 및 개선

- 경매사들이 임의로 전산처리된 판매원표를 수정하지 못하게 하고, 임의조작 여부를 전산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
- 낙찰가의 수정을 하게 될 경우 법 규정을 철저히 따르도록 관리 감독 강화 방안 마련
- 경매과정 비리에 가담한 경매사와 중도매인은 시장에서 영구 격리하고, 엄정한 사법처리

(5) 종합유통센터의 도매기능 강화를 통한 소비자 가격형성기능 강화

- 종합유통센터는 애초의 설립취지와 지원목적에 따라 도매위주로 운영
 - 도매 확대를 통한 계통출하 확대
-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경로에 다양성을 부여하여 도매시장의 기능 보완 및 새로운 전문유통을 선도하도록 산지지도, 직거래 확대 등 강화
- 종합유통센터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예약수의거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

(6) 농협의 계통출하 및 산지 유통시설 확충

- 농협 품목별연합회의 육성을 통한 계통출하 강화 등 생산자 조직화 지원
- 일정규모 이상으로 출하할 경우 하역비 면제 등 우대 조치 강화
- 농협의 경제사업 강화로 계통출하의 높은 수취 가격 보장
- 농협은 조합원의 영농 및 판매활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노력
- 유통 전 과정에 저온유통체계 도입(Cold Chain System)
 - 수송차량 내부에 온도기록 장치설치로 분쟁의 소지 방지 및 책임체계 구축
- 출하조절을 담당하는 집하장, 저온저장시설 등 산지 유통시설 대폭 확충
 - 산지에서 포장, 규격화, 예냉은 물론 수급조절이 가능토록 할 것
 - 기존 포장센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회원확보와 저장시설 확보를 통한 물량확보

7

농업인력 육성정책 강화 및 지속적인 지원방안 수립

(1) 농업·농촌·농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도모

- 농업에 대한 이해와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체계적인 초등교육 시행
- 농업의 공익기능과 중요성을 홍보하는 광고 예산 편성, 광고 추진
-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에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나 그 중요성에 대해 비중 있는 중요 논술문제로 반드시 출제할 것
- 농업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 농촌 복지환경 증진, 농산물값 보장 등 '최저 삶의 질 보장'을 위한 복지환경 조성기반 구축
 - 농산물 가격 보장, 원활한 토지공급 등 중기 전략과 함께 농촌 삶의 질을 높이는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농업·농민·농촌에 대한 인식 전환 도모
-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

(2) 후계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

- 지원자금의 확대(최소 1억원) 및 무이자 지원
 - 현재 1인당 자금 지원 규모(평균 3,000만원 수준)는 농업기반조성 및 시설현대화에 부족하므로 1인당 자금지원 규모를 1억원 이상 확대
- 농신보 한도액 상향조정 : 현행 1억원에서 최고 2억원으로 상향조정
- 후계농업인의 생활기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병행 지원

○ 후계농업인 확대

- 최소 신청자의 90% 이상 선발
 - 기존의 농사 짓던 사람도 선정될 수 있도록 제한연령 조정 : 현행 40세 → 45세
- 후계농업인 지원자금의 오용 방지를 위한 지도·감독 강화

(3) 후계농업인의 명칭 변경 및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

- 농업경영인으로 명칭 통일
 - 『농업·농촌 기본법』『농어촌발전특별법』 등 농업관련법에 표기되어 있는 후계농업인이란 법의어를 농업경영인으로 개정
-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

(4)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의 확대

- 후계농업인의 산업기능요원 선발 확대
- 산업기능요원의 관리·감독 강화
 - 산업기능요원 중 복무완료 후 영농 지속 비율이 38.9%에 불과해 집중적인 관리 강화 필요

(5) 농업인력육성 관련 정부 정책을 농림부로 일원화

- 근본적인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및 행정업무를 농림부로 단일화
- 각 도에 설립된 농업계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농림부가 직접 관리

(6) 농업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계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

- 농업계 특수목적고를 국립화하고 졸업생에게 토지를 반드시 공급하는 방안 마련

- 고령농가를 농지이양장려금 등의 지원책으로 유인하여 토지 확보
- 농업계 출업생에게 장기저리의 토지 구입비 지원
- 자영농고 등 특목고 국립화는 예산지원에 한정하고 자율권 보장
- 농업계 학교 기반시설 및 재학·졸업생에 대한 지원 확대
 - 졸업생의 정착률 향상을 위해 창업농 지원, 기술·교육 지원 확대
 - 농업계 학교 시설 확충, 장학금 지원 확대, 병역면제 등 기타 지원 강화
 - 농업계 고등학교의 전문화 과정 설치 등으로 농업 전문대학 증설

8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

(1)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

- 환경친화적 영농자재 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
 - 재활용, 환경친화형 비닐·농약병, 농약·화학비료 대체재 생산 업체에 손실보전
 - 미생물제, 퇴비부숙제, 유기질비료 등의 구입 가격에 대해 30% 보조지원 (2002년에는 유기질비료만 25% 지원 계획)
- 생산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토양개량 사업 추진
 - 「읍·면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」를 토양개량제 공급사업과 객토사업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「읍·면토양개량추진위원회」로 개편
 - 토양개량제(석회, 규산) 공급 개선 : 토양 적

정 기준 제시 및 지원(현 4년 1주기)

- 객토사업 지원 방법 전환 : 현 100% 응자 사업 국고 40%, 지방비 40%, 자담 20% 보조 사업

(2)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 강화

- 친환경농산물 전용유통구조 마련
- 유기농산물가공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
 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해 인증 받은 유기농산물가공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(현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성상을 변형시키지 않는 가공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)
- 친환경직접지불사업의 현실화
-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재배기술 정립
 - 현재 주류인 채소류, 엽채류, 곡류외 과일, 특작물 등으로 친환경농법 확대
 - 작물양분종합관리(INM)·병해충종합관리(IPM)와 생산비 절감효과 제고 및 친환경농산물의 고급화 등 다양한 농법개발
 - 농협·농업기술센터 주도의 친환경농법에 대한 연구개발 및 지침서 작성·보급

9

농민의 정치 참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수립

(1) 각 정당 선거 후보자 추천시 농민대표 참여 보장

- 농촌지역에서 각 당 비례대표(국회의원, 광역의원) 후보자 선정시 여성과 동일하게 농민대표 당선권내 할당 의무화